

제천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증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60
----------	-----

제출년월일
제 출 자 제천시장

1. 제안 이유

- “ 법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 라는 규정 위반

2. 주요 골자

- 조례 제2조 단서 「 다만, 영세민 생활안정 등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규정 삭제

3. 근거 법령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5조

4. 조 례 안 : 불임참조

5.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참조

- 불 임 : 가. 제천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증개정 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기타참고자료(근거 법령 등)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 다만 영세민생활안정등 기타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를 삭제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기금구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u>다만, 영세민생활안정등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u></p>	<p>제2조 (기금구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u>(삭제)</u></p>

4. 文化藝術振興法

5. 韓國國際交流財團法

第4條(附屬金品の募集許可) ①附屬金品の募集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에 의하여 內務部長官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許可權者"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민은 시행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重要事項을 변경하는 場合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屬金品の 募集許可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에 한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救濟事業
2. 天災·地變 기타 이에 準하는 災難의 救恤事業
3. 貧우이웃돕기등 慈善事業
4. 公益을 目的으로 國民의 적극적인 힘이 필요한 場合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比에 依하여 附屬金品の 募集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③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청에 있어서는 이미 附屬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附屬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條(國家등 附屬金品 募集 制限)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및 其 所屬機關과 公務員은 附屬金品の 募集을 할 수 없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및 其 所屬機關可 公務員은 自任적으로 寄託하는 金品이라도 法令에 다른 規定이 있는 場合를 제외하고는 이를 收受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比에 依하여 사용·용도의 目的을 지정하여 自任적으로 寄託하는 場合로서 附屬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場合 또는 募集者의 외에 依하여 단순히 附屬金品을 接受하여 募集者에게 傳達하는 場合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第6條(附屬金品の 接受場所등) ①附屬金品은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醫藥機關·金融機關 기타 公開된 場所에서 收受하여야 한다.

②募集者 또는 募集從事者는 附屬金品の 收受시 實을 帳簿에 기재하고, 附屬者에게 領收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匿名附屬등 附屬者를 알 수 없는 場合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후 71)

제천시일세민생활안정지급용자조례

제정	1981.12.23	조례 제 176호
개정	1983. 8.16	조례 제 284호
"	1986.11. 7	조례 제 436호
"	1988.12. 5	조례 제 576호
"	1989. 6.29	조례 제 671호
"	1990. 6.26	조례 제 707호
"	1990.10.12	조례 제 725호
"	1991. 1.29	조례 제 74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목이 경히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생계자금에 부족한 영세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용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다만, 영세민 생활안정동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예산외로 조성할 수 있다.

제3조(용지대상) ①기금의 용지대상은 생계기 곤란한 저소득층에 이용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생식, 노점및 이에 준하는 임대 생생위를 위한 자금
2. 최저저민, 기타 개념을 형성기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주보증금중 일부
4. 직계가족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용기금의 성향 능력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용기를 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기금의 운영

제4조(용자금액등) ①기금의 용지액은 1세대당 5,000,000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를 받은 자는 2년 기차우 36개월 균등 분할 상환하여야